

현장(운송용역)설명서

안동봉화축협 사료운송 용역업체 선정

2016. 02. 23.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현 장 설 명 서

1.용역명:안동봉화축협 사료운송 용역업체 선정

2.운송품목:배합사료 및 기타

3.운송수단및운송범위:안동봉화축협에서 발주하는 제품(배합사료)을 일반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안동,봉화지역)까지 배송(상하차도 포함).

1)안동지역:농협사료 경북지사에서 안동관내(농가,창고) 전지역(지대,벌크)

2)봉화지역:농협사료 경북지사에서 봉화관내 전지역(벌크)

4.운송예상물량및수송차량.인력운용:2015년도말기준하여다소증감예상.

5.조합사료판매현황및수송차량.인력운용현황(2015년도말)

1)사료판매현황(2015년12월말기준)

(단위:포,kg)

구 분	사료판매량 (지대)		사료판매량 (벌크)		비 고
	수량(포)	농가수	수량(kg)	농가수	
안동지역	802,390	600	24,291,248	125	
봉화지역			10,001,398	45	용역 벌크2대
합 계	802,390		34,292,646		

2)수송차량운용현황(2015년12월말기준)

(단위:대)

구 분	일반화물자동차 (지대)					특수화물자동차 (벌크)		비고
	1톤	2.5톤	3.5톤	5톤	합계	특수차	합계	
안동지역	1	1	2	1	5	3	3	
봉화지역	-	-	-	-	-	2	2	현재용역
합 계	1	1	2	1	5	5	5	

3) 인력 운용 현황 (2015년 12월 말 기준)

(단위:명)

구 분		안동지역			봉화지역			비 고
		기사	보조 인력	소계	기사	보조 인력	소계	
1톤	지대	1	0	1	-	-	-	
2.5톤	지대	1	1	2	-	-	-	
3.5톤	지대	2	1	3	-	-	-	
5톤	지대	1	1	2	-	-	-	
특수차량	벌크	3	0	3	2	0	2	봉화지역 현재용역
합 계		8	3	11	2		2	

6. 특수조건: 낙찰자에게 조합사료수송 화물차량 매각 협상 우선권 부여.

7. 기타 유의사항: 운송(용역) 계약서 및 용역지침서 참조 요망.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 | |
|--|----|
| <input type="checkbox"/> 붙임 1. 입찰유의서 | 1부 |
| <input type="checkbox"/> 붙임 2. 입찰특별유의서 | 1부 |
| <input type="checkbox"/> 붙임 3. 사료운송 용역 계약서 | 1부 |
| <input type="checkbox"/> 붙임 4. 사료운송 용역 지침서 | 1부 |
| <input type="checkbox"/>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 1부 |
| <input type="checkbox"/>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 1부 |

※ 현장설명서는 현장설명일 지정일시·장소에서 현장설명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설명을 합니다.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본 입찰유의서는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사료운송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합 계약 관련 제 규정 및 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조합 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우편접수 접수는 허용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하는 허가증 또는 자격등록증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5. 입찰보증금(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1(입찰참가 자격)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 사료 운송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

② 입찰등록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경상북도 내에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업체.

③ 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농,수,축협,금융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④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자 또는 업체.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유의서 현장설명서,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별표 (예정물량 X 입찰단가)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본 조합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등으로 본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 조합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별표 (예 정 물 량 표) (단위: 포,kg,원)

구 분		예정물량 (1년간)	입찰단가	금 액	비 고
지 대 (포)	안 동	800,000	금: 원(W: 원)		부가세포함
별 크 (kg)	안 동	24,000,000	금: 원(W: 원)		부가세포함
	봉 화	10,000,000	금: 원(W: 원)		부가세포함
합 계					※100분의5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협·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단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찰단가 산출시 유의사항)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용역 내용 확인하고 본 조합 사료판매량 및 운송여건과 차량운영 현황 등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비용을 입찰단가 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경영능력, 인력자원, 수송차량 확보등 사료운송 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단가입찰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입찰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공고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은 이를 본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최저가격결정은 (예정물량X입찰단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본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 외에 사료운송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 조합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예정물량X계약단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예정물량X계약단가)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5.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② 입찰일 현재 농협·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 조합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기타사항)** ① 입찰진행 중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으로 무효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입찰자 전원과 당사의 합의로 유효화 할 수 있다.
- ② 입찰자는 상기 입찰유의서의 내용과 당사의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③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합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6년 월 일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장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특별유의서는 본 조합(이하"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 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본 조합 사료운송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서(배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2016년 월 일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장

사료운송 용역 계약서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전형숙(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사료(이하 "제품"이라 칭한다)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제품을 "을"의 수송차량으로 "갑"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송하는 사료운송
용역계약으로 "갑"과"을"의 용역계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종료 1개월전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제 3 조(운송단가)① "제품"의 운송단가 계약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포, kg)

구 분		계약단가(원)			비 고
지 대(포)	안 동	금	원(W	원)	부가가치세 포함
벌 크(kg)	안 동	금	원(W	원)	
	봉 화	금	원(W	원)	

② 제2조 ②항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시 물가상승 및 기타요인
으로 인한 운송단가 조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 4 조(대금결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송한 물량을 기준으로
수송운임을 정산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제 5 조(사료수송) ① "을"은 "갑"이 요청한 "제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농협사료 경북지사 ↔ 창고 또는 농가)까지 운송 및
관리를 책임진다.(상하차도 포함)
② 본 계약 이외의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공급 요청시
"갑"과"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사료공급) ① "을"은 "갑"의 운송요청에 의거 "제품"을 차질
없이 운송하여야 하며 차량의 정비, 배차 등의 사유로 양축가에

대한 사료공급에(당일배달 포함) 차질이 없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을"이 운송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갑"은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운송비는 "을"이 지급한다.

③ "제품"의 반품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차질없이 반품처리를 수행 하여야 한다.(별도의 반품 운송비는 지급하지 않음)

④ "을"은 "제품" 적재용 좌대를 해당 공장에 반품하여야 한다.

제 7 조(운송책임) ① "을"은 농협사료 경북지사에서 발행된 거래명세표 및 농가공급용 거래내역서를 매일 "갑"에게 인계함으로써 당일 수송책임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② "을"의 공급내역 상위로 거래농가와 분쟁이 발생되면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③ "을"은 "제품"의 운송 및 공급지연, 농가 적재불량,종사자의 불친절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소량의 "제품" 운송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품"취급 중 발생하는 변질, 파포,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8 조(운송관련 종사자 관리) ① "을"은 운송관련 종사자의 채용 및 관리의 의무를 가지며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갑"의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의 관리하에 있는 종사자의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9 조(지체상금)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품"의 배달지연으로 농가의 민원 발생시

2. 소량의 "제품" 배달을 회피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품"의 적재불량 및 적재장소 오류로 인한 민원발생시

4. "제품"의 배달된 수량이 부족할 경우

5. 위 1~2호에 의해 "갑"이 운송할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3호의 경우 해당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4호의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지체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예정물량X계약단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

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물량X계약단가)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계약보증금 및 미지급 운송비의 귀속) ①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 및 미지급 운송비는 "갑"에 귀속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사항이 완전히 이행된 후 제비용을 차감하고 "을"에게 환급한다.

제 12 조(상계처리) "갑"은 다음의 경우 "을"의 계약보증금 또는 미지급운송비에서 상계처리 하며 "을"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 제6조②항, 제7조②,⑤항, 제9조, 제13조5호의 경우

제 13 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의 경우 "을"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9조 1~4호에 의거 더 이상 운송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을"이 계약 후 "갑"의 승인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위탁하는 경우
3. "을"이 조합의 이미지를 훼손 하거나 "제품"판매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품"수송과 관련하여 "을"이 3회이상 양축 농가에서 민원 및 배달회피(당일배송포함) 또는 기피한 경우 당 조합이 발송한 최고장 수령시"을"은 운송포기로 간주하고 다른 경쟁 입찰자로 교체한다.
5. "제품"의 재고부족, 창고 현금판매대금 미 입금 등"갑"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한 경우
6. "을"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또는 계약 만기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7. 위의 1~6호 외에 "갑"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또는 만기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특약사항) ①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본 계약서상의 운송 업체인 "을" 이 아닌 제3의 업체로 변경 계약할 경우 잔여 기간 또는 인수.인계업무와 공백기간(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최고 1개월까지 적용)동안의 운송용역의 책임은 본 계약서상의 운송용역업체 "을"로 하며 동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갑"에게 "제품" 운송용역에 대한 피해 및 금전적 손해를 발생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피해를 무한 배상할 것을 특약사항 으로 정한다.

② ①항에 의거 운송업체가 변경될 경우 운송용역에 대한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발생시 미지급 운송비 및 계약보증금 에서 차감하고 "을"에게 지급한다.

제 15 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료운송 용역 지침서를 준용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 16 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따른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 으로 한다.

제 17 조(계약서작성)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갑" 주 소 : 안동시 제비원로 152
상 호 :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성 명 : 조합장 전 형 숙 (인)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붙임-4]

사료운송 용역 지침서

2016. 02.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I . 사료운송 (용역) 목적

- 조합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합사료 운송사업을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한 배송으로 원활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지연등으로 인한 민원해소 등으로 조합구매사업 확대 및 활성화 기여.

II . 사료 운송(용역) 기본 지침

▣ 기본 내용

- 농협사료 경북지사에서 생산된 배합사료를 안동봉화축협 창고 및 관내농가(벌크사료는 봉화지역 포함)까지 성실히 배송하여야 하며 대농가 서비스 및 민원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조합 및 농가의 운송요청에 의거 "제품"을 차질없이 운송하여야 하며 차량의 정비, 배차 등의 사유로 양축가에 대한 사료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품"의 반품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차질없이 반품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별도의 반품 운송비는 지급하지 않음)
- 사료공장에서 발행된 거래명세표 및 농가공급용 거래내역서를 매일 조합에게 인계함으로써 당일 수송책임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 제품"의 운송 및 공급지연, 농가 적재불량, 종사자의 불친절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 소량의 "제품" 운송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배송중 발생하는 변질, 파포,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가 져야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표준안)

축협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축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용역계약건(개별 계약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용역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개별 계약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에 적용합니다.

○ 내 용

축협에서 발주하는 공사·구매·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사무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 . .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장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축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용역 등의(개별 계약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축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축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축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축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축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축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

서약자 : _____ 대표 : _____ (인)

안동봉화축협 귀중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안동봉화축협 공고 제2016- 1 호	입찰일자	2016. 03. 08.
	입찰건명	안동봉화축협 사료운송 용역업체 선정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액	금	원정(W)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은행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해당없음”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			사용인감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용역(운송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허가증 사본 1통 2.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감증명서 1통 5.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16.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안동봉화축협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